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2582호
----------	--------

2021. 3.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 3. 3. 서병완 의원외 17인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1. 3. 4. 의회운영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

2021년 3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임준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에 관한 원칙과 집행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전문위원 이주현)

□ 조례 제정 취지 및 배경

- 양천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민으로부터 높은 청렴성과 책임성을 기대 받고 있음. 이에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려는 것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첨부하여 ①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자체 점검 및 교육 실시와 ②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항목’을 포함한 조례 또는 규칙을 제·개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였음.
- 이를 종합할 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응하면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음.

□ 법적 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함.)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해당됨. 또한,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본 제정안은 앞서 언급한 시행령과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고 함.)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및 “[별표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
- 참고로, 양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하지만, 훈령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각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이 있고, 양천구의원 18명 모두가 공동 발의를 통해 스스로의 책임감과 자정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조문별 검토

-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 등(안 제3조부터 제5조)
 -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규칙 및 훈령을 명시하였음.

-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① 의회 명의 신용카드 사용 원칙 제시, ② 현금 지출의 예외 사항 마련, ③ 간담회 등 접대비 집행 금액 범위¹⁾ 제시, ④ 물품 구매와 접대성 경비 집행 시 행정 사항 규정, ⑤ 지출건별 서류 작성
- 안 제5조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훈령〔별표 5〕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설명회 자료에 첨부되었던 〈00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참고한 것으로 사료됨.
-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안 제6조제1항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내역 및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훈령〔별표 6〕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지출건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훈령〔별표 6〕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
 - 안 제7조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해당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에 따른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함.

【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의 범위로 집행하도록 함.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 ④ (생략)

○ 교육 및 점검 등(안 제8조)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위해 의장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주기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사료됨.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환수·징계요구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부당사용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 유인효과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음. 단, 의원들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종합 의견

-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탄력적 운용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음. 이 때문에, 행정기관뿐 아니라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7명,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